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581
----------	-----

2019년 4월 22일  
환경수자원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19년 3월 29일, 서울특별시장
- 나. 회부일자 : 2019년 4월 3일
- 다. 상정일자 : 제286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 
(2019년 4월 22일 상정·의결)

## 2. 제안설명의 요지 [제안 설명자: 푸른도시국장 최윤중 ]

### 가. 제안이유

-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인 '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'에서 '장애'가 '직무수행'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 및 장애인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서울시인권위원회 권고 결정 통보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

## 나. 주요골자

-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규정에서 ‘심신장애’를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변경함(안 제18조제2항제2호)
- 그 밖에 조례의 조문 문구를 정비함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## 4. 전문위원 검토보고 (수석전문위원 : 김 선 희)

### 가. 개정안의 개요

- ‘심신장애’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에서 해촉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‘장애’가 ‘직무수행’을 가로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강화할 수 있으므로, 조항을 개정하고,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의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로 순화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.

### 나. 검토의견

#### 1)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

-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6조(차별금지)에 의하면 “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 받아서는 아니 된다”라고 명시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2016년 2월 「국가인권위원회법」 제8조 또한 “위원이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극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”라는 표현은 장애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 소지가 있어 “장기간의 심신쇠약”으로 개정한 바 있음.

## 2)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

-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4차 회의를 통해 장애인 편견과 차별 소지가 있는 위원 위촉 해제 사유를 포함한 서울시 모든 조례 개정을 권고하였음.
- 동 조례 제18조제2항제2호에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, ‘심신장애’라는 문구는 ‘장애’가 ‘직무수행’을 막는다는 인식을 주어 장애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음.
- 따라서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‘장애’라는 단어 대신 ‘장기간의 심신쇠약’으로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임.

## 3)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적용

-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, 국민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,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바꾸고자 알기 쉬운 법령 정비를 하고 있음.
- ‘호선하다’의 뜻은 “어떤 조직의 구성원들이 서로 투표하여 그 조직 구성원 가운데서 어떤 사람을 뽑는다”로 정의하고 있는데, 안 제17조 내용 중 ‘호선하여 선출하다’는 표현은 의미가 중복되고 있으므로 ‘호선한다’로 수정하는 것은 타당함.

- 본 개정안은 조례 문장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맞추고,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친숙한 문체로 사용하도록 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므로 이견은 없음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6. 토론요지 : 생략

8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위해”를 “위하여”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남대문로 5가”를 “남대문로5가”로, “만리동 1가”를 “만리동1가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다른”을 “관하여 다른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중 “위탁 할”을 “위탁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를 준용한다”를 “에 따른다”로 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를 준용하여”를 “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에 따라”로, “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」”를 “하거나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위해”를 “위하여”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한”을 “인정하는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이용정지”를 “이용정지를 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시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공익을 위하여 서울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.

제10조제3항 중 “제1항제4호”를 “시장은 제1항제4호”로, “취소, 변경 또는”을 “취소 또는 변경하거나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서울로를 이용할 경우”를 “시장은 이용자에 대하여”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점용할 경우”를 “점용하는 자에 대하여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심의 또는 자문하기”를 “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”로 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호선하여 선출한다”를 “호선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당연직위원”을 “당연직 위원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제2호 중 “심신장애로”를 “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”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로 7017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및 녹지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"서울로 7017(이하 "서울로"라 한다)"이란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가 527부터 만리동 1가 62까지 조성된 고가보행로와 하부광장 등 그 부속물을 말한다.</p> 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서울로 이용 및 관리에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p> <p>제5조(사무의 위탁) ① 시장은 서울로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,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.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은 「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를 준용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<u>위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남대문로5가 ----- ----- 만리동1가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----- ----- <u>관하여 다른</u>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5조(사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위탁할</u>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에 따른다.</u></p>



현행	개정안
<p>제6조(편의시설 설치·운영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」를 준용하여 법인,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하게 할 수 있고, 필요한 경우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조례」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6조(편의시설 설치·운영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「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」에 따라 ----- ----- ----- 하거나 「서울특별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」----- -----.</p>
<p>제7조(서울로 활성화 사업추진) ①</p> <p>시장은 서울로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한 사업 등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7조(서울로 활성화 사업추진) ①</p> <p>----- 위하여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 인정하는 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조(이용허가의 취소, 변경 등)</p> <p>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허가를 취소, 변경하거나 <u>이용정지</u>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 <u>사용이 허가된 이후에도 국가</u></p>	<p>제10조(이용허가의 취소, 변경 등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<u>이용정지를 하는</u> ----- 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시장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또는 서울시가 공익을 위하여 사용이 필요한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허가된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.</p>	<p>가 공익을 위하여 서울로를 이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시민의 안전 확보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변경할 수 있다.</p>
<p>③ 제1항제4호 및 제5호와 제2항에 따라 이용허가를 취소, 변경 또는 이용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</p>	<p>③ 시장은 제1항제4호 ----- -----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1조(이용료) ① 서울로를 이용할 경우 별표 1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.</p>	<p>제11조(이용료)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대하여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1. ~ 2. (생략) ② ~ ④ (생략)</p>	<p>1. ~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5조(철거조치 등) ① 시장은 서울로를 무단으로 이용하거나 점용할 경우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</p>	<p>제15조(철거조치 등) ① ----- -----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 ----- ----- -----</p>
<p>② ~ ③ (생략)</p>	<p>② ~ 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6조(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설치) 시장은 서울로의 유지 관리</p>	<p>제16조(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 설치) -----</p>

현행	개정안
<p>및 이용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<u>심의 또는 자문하기</u> 위하여 서울로 7017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<u>호선하여 선출한다.</u></p> <p>③ 위원회의 <u>당연직위원</u>은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,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8조(위원의 임기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심신장애</u>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</p> <p>3. (생략)</p>	<p>-----</p> <p>--- <u>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</u> 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7조(위원회의 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 <u>호선한다.</u></p> <p>③ ----- <u>당연직 위원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위원의 임기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장기간의 심신쇠약</u>으로-----</p> <p>-----</p> <p>3. (현행과 같음)</p>